

●국가기록원공고 제2023-17호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, 2023년 비공개 기간이 연장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02일

국가기록원장

2023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

○ 2023년 30년 경과 비공개 기간이 연장된 대상 : 총 36,670철

재분류된 비공개 유형별 총 수량	비공개 유형							
	법령상 비밀·비공개 (제1호)	국방 등 국익침해 (제2호)	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(제3호)	재판관련 정보 등 (제4호)	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등 (제5호)	개인사생활 침해 (제6호)	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(제7호)	특정인의 이익·불이익 (제8호)
51,538철	-	-	-	14,868	-	36,670	-	-

※ 비공개 유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것으로 부분공개 포함, 비공개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 산정